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18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가. 제안이유

- 최근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주민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장려하고 있으나,
- 마을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 욕구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조성한 공간의 경우, 임대계약 만료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마포지역은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로 공동체공간 및 주민 소통공간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마을활력소가 조성되지 않은 마포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한 후, 공간 운영은 운영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며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형 운영보다는 지역상황에 능통한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 또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2)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연간 80백만원
 - 공간지기 등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및 공간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활력소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마을활력소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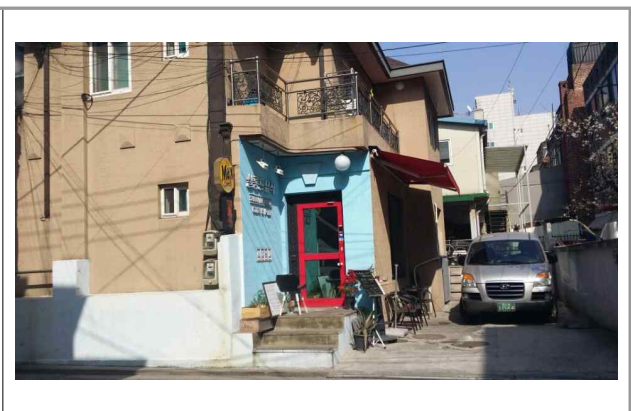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간지기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2017년도 하반기 운영 이후, 적정 예산액을 추계한 후 2018년도 예산부터 편성 운영.

○ 위·수탁 사무

- 마포 마을활력소 시설 관리·운영 일체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민간위탁 시설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50-23
- 규 모 : 연면적 250.78㎡
- 공간구성(안) : 마을사랑방, 카페, 문화공간(활동관), 대강당 등
- 진행상황 :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중

	
<p style="text-align: center;">위 치 도</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p>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마포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마포 마을활력소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50-23
- 규 모 : 연면적 250.78㎡
- 공간구성(안) : 마을사랑방, 카페, 문화공간(활동관), 대강당 등
 - 지역 주민과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을 위한 활동 거점공간 마련
 - 마을경제, 교육, 문화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마련
 - 청년층의 실험적 작업공간 및 중·장년층의 문화활동 공간 마련

층 수	구 성(안)	용 도	비 고
지상 1층	작은나무 카페 및 마을사랑방	소통공간	
지상 2층	청년인큐베이팅센터 및 활동관, 문화공간 등	문화마을경제, 활동 중심공간	
지상 3층	대강당	공연, 연회장	

※ 마을활력소 운영비 충당을 위한 카페 및 마을사랑방 등

- 진행상황 : 실시설계 용역 중



위 치 도



사 진

- 마포 마을활력소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업비 : 연간 80백만원 (2018년 예산편성 추진)
 - '18년도부터 회계·건물관리·홍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예산 편성
 - ※ 마을활력소 공간 관리비·운영비 등 기본경비(제세공과금)는 원칙적으로 자체조달
 - 공간지기 등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및 공간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활력소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마을활력소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간지기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위·수탁 사무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마포 마을활력소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마을활력소는 시·자치구에서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한 공간 마련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현재 관악구 행복나무 마을활력소와 서대문구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를 조성한바 있으며, 향후 자치구에서 12개의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금으로 시행)에 있음.

※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에 반해 민간 사유 시설에 조성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이 미흡함에 따라 시, 구에서 유휴 공공 시설 활용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임

* 마을활력소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마을배움터와 유사한 시설로는 마을활력소,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각 시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청소년수련관	마을활력소	마을배움터
정의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시설	시·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권역별로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 현실로 청(소)년들의 경쟁 및 고립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마을의 문제를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며 주민 전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기능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소년, 청년이 예술적 창의성을 발휘하며 마을 안에서 화합하는 공간(마을문화 작업실 운영,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이 아닌 문화적 관계 맺음으로 건전한 인격을 만드는 공동체 공간,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공간, 주민들 간 소통과 마을 배움 네트워크 구축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등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제27조제4항 신설)을 통해 법적근거는 마련하였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마포구 성미산에 위치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작은나무 카페’ 공간확보를 위한 면담(2015년 8월 17일)을 시작으로 성미산 현장방문을 통해 대상 부동산 매입을 추진(2016년 9월)하여(소요예산(부자매입비) 22억원),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지역사정에 능통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제고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지속가능한 마을활력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바,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추진 경과

-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작은나무 카페’ 공간확보 관련 면담 …… ’15.8.17.
 ※ 임대분쟁 관련 조정을 위해 면담
- 작은나무카페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 갈등 조정 합의 …… ’15.8.27.
 ※ 임대기간 2년 연장(’15.7.9~’17.7.8)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16. 1.
- 성미산 현장방문 및 간담회 …… ’16. 1.~ 2.
- 매입물건 조사 및 대상지 최종 결정 …… ’16. 1.~ 4.
- 2016년 제4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심의 …… ’16. 7.
- 대상 부동산 소유자와 가격조정 협의 …… ’16. 8.~ 9.
- 대상 부동산 매입 추진 …… ’16. 9. ~11.
- 대상 부동산 행정재산 등재 완료 …… ’16. 12.

-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 20838호(’15.12.7),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기획조정실)
- 4347호(’16.6.7), 2016년 마포구 성미산 마을주변 성미산 마을활력소 건물매입계획
- 8773호(’16.9.26), 2016년 마포구 성미산 마을주변 성미산 마을활력소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변경)

- 3563호('17.3.28), 마포구 성미산 마을 활력소 조성 추진계획

- 3646호('17.3.29),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 **향후 계획**

- 수탁자 공개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17. 9월~10월

- 수탁자 선정 의견 반영한 리모델링 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17. 8월~11월

- 마을활력소에 대한 민간위탁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마포구 마을활력소의 민간위탁은 추진 배경 및 추진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로 매입(2016.9.28)한 동 부동산은 1층에 일반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재산으로, 리모델링 및 공간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만료(2018.7.31) 이후 임차인이 불법 점거시 명도소송 등 소송이 불가피하며, 마을활력소로 동 건물 전체(연면적 250.78㎡)를 민간위탁하려는 동 동의안에 1층 일반카페도 위탁하는 것인지와 일반카페도 위탁에 포함시 마을활력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년)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고, 사권이란 '임차인이 있는 재산 등' 을 포함하는바, 동 사업이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나. 사권의 의의

1)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인 공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함.

2) 재산에 대한 사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다. 사권의 종류

1)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함.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2) 취득하는 재산이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처분의 제한을 받은 경우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인·허가, 면허 등에 따라 사인이 이익을 보는 권리,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행위, 입차인이 있는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 사용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마포구 마을활력소의 민간위탁시 공간지기 등 최소한의 인건비 경비만(8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카페 등의 자체수입으로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 방식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셋째, 마포구 마을활력소의 조성 및 민간위탁은 시민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성미산 마을의 ‘작은 나무카페’가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로 동 카페 운영이 위기에 처하여 젠트리피케이션¹⁾ 대책으로

1)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주거공간·상업공간 모두에서 발생)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상업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공간은 임대주택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바, 서울시는 상업

그 곳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된바, 민간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에 ‘민간위탁’이라는 관의 개입으로 오히려 자립가능성 저해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2017.5월)을 살펴보면, 상가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고, 서울시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없다고 하겠음.
 - ※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바, 민간위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 등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넷째, 서울시에서 특정지역의 소규모 공동체만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원을 위해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검토

-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임차인이 있는 재산으로 민간위탁의 범위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의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 마을공동체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관의 개입으로 자립가능성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던 마포지역은 최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공동체 공간 및 주민 소통공간이 상실 위기에 처해 있어 민간위탁이라는 관의 개입 없이는 마을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최근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주민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장려하고 있으나,
- 나. 마을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 욕구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조성한 공간의 경우, 임대계약 만료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 특히 마포지역은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로 공동체공간 및 주민 소통공간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라.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마을활력소가 조성되지 않은 마포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한 후, 공간 운영은 운영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 시설규모 : 지상 2층(연면적 250.78㎡)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3길 2(성산동 205-23)



〈위 치 도〉

〈사 진〉

- 공간구성(안) : 마을카페, 공유부엌,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 개소일자 : 2017. 11월(예정)
- 이용대상 :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단체 등
- 주요내용 : 주민소통을 위한 마을사랑방 및 마을 내 문화공간 운영, 지역 청년 및 중·장년층의 교류공간 운영 등

나.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무 : 마포 마을활력소 시설 관리 · 운영 일체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연간 80백만원 (2018년 예산편성 추진)
 - '18년도부터 회계 · 건물관리 · 홍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예산 편성
 - ※ 마을활력소 공간 관리비 · 운영비 등 기본경비(제세공과금)는 원칙적으로 자체조달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며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형 운영보다는 지역상황에 능통한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 또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구성팀 김승희 (☎ 2133-6344)